

癸卯年  
2023

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

이 달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 
모성보호제도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입니다



# 직장 내 성희롱은 조직문화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



## 직장 내 성희롱이란?

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 
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 
다른 근로자에게 **성적 언동 등으로**  
**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**을 느끼게 하거나  
**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**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 
**고용에서 불이익**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

# 1

January / 2023

# 12

2022

S	M	T	W	T	F	S
				1	2	3
4	5	6	7	8	9	10
11	12	13	14	15	16	17
18	19	20	21	22	23	24
25	26	27	28	29	30	31

# 2

S	M	T	W	T	F	S
			1	2	3	4
5	6	7	8	9	10	11
12	13	14	15	16	17	18
19	20	21	22	23	24	25
26	27	28				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1 <small>신정</small>	2	3	4	5	6 <small>소한 / 12.15</small>	7
8	9	10	11	12	13	14
15	16	17	18	19	20 <small>대한</small>	21 <small>12.30</small>
22 <small>설날 / 1.1</small>	23	24 <small>대체공휴일</small>	25	26	27	28
29	30	31				



### 육아휴직급여

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나,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「남녀고용평등법」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(최대 1년)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80%(최대 150만 원)를 지원합니다.



### 3+3 부모육아휴직제

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원합니다.

\* 통상임금의 100%(첫째 달 200만 원, 둘째 달 250만 원, 셋째 달 300만 원) 지원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

☎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

# 직장은 성적인 언행을 할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

이런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

## ◆ 육체적 행위

- 입맞춤이나 포옹,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

## ◆ 언어적 행위

- 음란한 농담,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(전화, 통신 및 인터넷매체 등)
-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인 비유, 신체 부위 언급 등

## ◆ 시각적 행위

- 음란한 사진·그림·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줌(문자, SNS 등 포함)

## ◆ 기타 성희롱 행위

-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행



# 2

February / 2023

## 1

S	M	T	W	T	F	S
1	2	3	4	5	6	7
8	9	10	11	12	13	14
15	16	17	18	19	20	21
22	23	24	25	26	27	28
29	30	31				

## 3

S	M	T	W	T	F	S
			1	2	3	4
5	6	7	8	9	10	11
12	13	14	15	16	17	18
19	20	21	22	23	24	25
26	27	28	29	30	31	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		1	2	3	4 <small>입춘</small>
5 <small>정월대보름 / 1.15</small>	6	7	8	9	10	11
12	13	14	15	16	17	18
19 <small>우수</small>	20 <small>2.1</small>	21	22	23	24	25
26	27	28				



### 육아휴직지원금(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)

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,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(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)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.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

☎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

# 성적인 농담에 회사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

## 직장 내 성희롱! 이것만은 알아두세요

### ◆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

남녀 모두 성희롱 행위자, 피해자가 될 수 있고,  
동성 간 행위도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

### ◆ 행위자의 의도와 성희롱의 성립 여부

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 
여부가 중요하고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어요

### ◆ 성적 언동의 횟수

단 한 번만 했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 
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도  
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성립될 수 있어요

# 3

March / 2023

## 2

S	M	T	W	T	F	S
			1	2	3	4
5	6	7	8	9	10	11
12	13	14	15	16	17	18
19	20	21	22	23	24	25
26	27	28				

## 4

S	M	T	W	T	F	S
						1
2	3	4	5	6	7	8
9	10	11	12	13	14	15
16	17	18	19	20	21	22
23	24	25	26	27	28	29
30						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		1 <small>삼일절</small>	2	3	4
5	6 <small>경칩 / 2.15</small>	7	8	9	10	11
12	13	14	15	16	17	18
19	20	21 <small>춘분</small>	22 <small>윤 2.1</small>	23	24	25
26	27	28	29	30	31	



###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제도

임신 근로자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(산후 45일 이상)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며, 이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. 또한,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.(기업규모에 따라 지급기간 다름)

\* 휴가급여는 휴가기간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100% 지급(고시 상한액까지)

\* 기간제·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남은 휴가기간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음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

**☎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**

# 피해자는 '언제 그만둘까'가 아니라, '어떻게 해결할까'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

##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

- ◆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 
퇴사보다는 피해 회복에 집중
- ◆ 원하는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 
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, 행위자 처벌·분리, 손해배상 등
- ◆ 증거를 수집합니다  
직접증거나 목격자의 증언, 일기·타인에게  
피해사실을 전달한 증거·증언 등
- ◆ 직장 내 해결절차를 이용합니다  
구제 또는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담당자에게,  
없으면 사업주나 인사부서에 신고
- ◆ 외부기관을 통해 대응합니다  
지방고용노동관서(진정, 고소·고발), 노동위원회(시정 신청),  
국가인권위원회(진정), 법원(민사소송) 등



# 4

April / 2023

# 3

S	M	T	W	T	F	S
			1	2	3	4
5	6	7	8	9	10	11
12	13	14	15	16	17	18
19	20	21	22	23	24	25
26	27	28	29	30	31	

# 5

S	M	T	W	T	F	S
	1	2	3	4	5	6
7	8	9	10	11	12	13
14	15	16	17	18	19	20
21	22	23	24	25	26	27
28	29	30	31			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					1
2	3	4	5 식목일 / 청명 / 윤 2.15	6 한식	7	8
9	10	11	12	13	14	15
16	17	18	19 4.19 혁명	20 장애인의 날 / 곡우 / 3.1	21	22
23 / 30	24	25	26	27	28	29



### 예술인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

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 중 출산여성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합니다.

\* 출산 전후 90일(다태아 120일)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 **상한액** 매년 고시 **하한액** 예술인 월 60만 원, 특고 월 80만 원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

**☎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**

# 불필요한 성적 언행은 나의 품격과 회사 이미지를 순식간에 훼손할 수 있습니다

##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

- ◆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
  - \*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◆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항상 게시하거나  
갖춰두어야 합니다
  - \*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◆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내에 항상 게시해야 합니다
- ◆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을 막고 피해자에게  
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

# 5

May / 2023

# 4

S	M	T	W	T	F	S
						1
2	3	4	5	6	7	8
9	10	11	12	13	14	15
16	17	18	19	20	21	22
23	24	25	26	27	28	29
30						

# 6

S	M	T	W	T	F	S
				1	2	3
4	5	6	7	8	9	10
11	12	13	14	15	16	17
18	19	20	21	22	23	24
25	26	27	28	29	30	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1 근로자의 날	2	3	4 3.15	5 어린이날	6 입학
7	8 어버이날	9	10	11	12	13
14	15 스승의 날 / 성년의 날	16	17	18 5.18 민주화운동 기념일	19	20 4.1
21 부부의 날 / 소만	22	23	24	25	26	27 부처님 오신날
28	29	30	31			



##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

\* 총 150만 원(유산·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)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

☎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

# 성직인 언행은 아무리 가벼워 보여도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

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하게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

◆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기 전(前)

## 조사의무

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
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

\*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 피해자 보호의무

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
근무장소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



# 6

June / 2023

# 5

S	M	T	W	T	F	S
	1	2	3	4	5	6
7	8	9	10	11	12	13
14	15	16	17	18	19	20
21	22	23	24	25	26	27
28	29	30	31			

# 7

S	M	T	W	T	F	S
						1
2	3	4	5	6	7	8
9	10	11	12	13	14	15
16	17	18	19	20	21	22
23	24	25	26	27	28	29
30	31					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			1	2	3 <sup>4.15</sup>
4	5	6 <sup>현충일 / 망종</sup>	7	8	9	10
11	12	13	14	15	16	17
18 <sup>5.1</sup>	19	20	21 <sup>하지</sup>	22 <sup>단오 / 5.5</sup>	23	24
25 <sup>6.25 전쟁일</sup>	26	27	28	29	30	



## 근로자 유산·사산휴가 및 급여제도

임신 근로자가 유산·사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.(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 차등 부여)  
또한,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는 유산·사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.(기업규모에 따라 지급기간 다름)

\* 휴가급여는 휴가기간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100% 지급(고시 상한액까지)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

☎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

# 성희롱 한 번으로 징계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

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하게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

## ◆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(後)

### 피해자 보호의무

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

\*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

지체 없이 행위자 징계,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

\*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

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

\*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### 비밀누설 금지의무

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

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

\*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 7

July / 2023

## 6

S	M	T	W	T	F	S
				1	2	3
4	5	6	7	8	9	10
11	12	13	14	15	16	17
18	19	20	21	22	23	24
25	26	27	28	29	30	

## 8

S	M	T	W	T	F	S
		1	2	3	4	5
6	7	8	9	10	11	12
13	14	15	16	17	18	19
20	21	22	23	24	25	26
27	28	29	30	31		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					1
2 <sup>5.15</sup>	3	4	5	6	7 <sup>소서</sup>	8
9	10	11 <sup>초복</sup>	12	13	14	15
16	17 <sup>제헌절</sup>	18 <sup>6.1</sup>	19	20	21 <sup>중복</sup>	22
23 <sup>대서</sup> / 30	24 / 31	25	26	27	28	29



###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

근로자가 임신한 지 12주 이내,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\*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 가능, 급여삭감 없음

\* 관련 내용을 작성한 문서와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



### 임신 근로자 출·퇴근시간 변경제도

근로자가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·퇴근시간 변경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

\* 근로시간은 동일하므로 급여삭감은 없음

☎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

# 사법처리나 과태료 처분 외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

## 신청방법 및 절차

###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하기

#### 신청대상

- ◆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근로자등에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경우
- ◆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
#### 진행과정

- ◆ 접수 후 조사 및 심문 진행
- ◆ 신고내용이 '인정'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 
(불리한 행위 중지, 근로조건 개선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등 적절한 배상)

\*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# 8

August / 2023

# 7

S	M	T	W	T	F	S
						1
2	3	4	5	6	7	8
9	10	11	12	13	14	15
16	17	18	19	20	21	22
23	24	25	26	27	28	29
30	31					

# 9

S	M	T	W	T	F	S
					1	2
3	4	5	6	7	8	9
10	11	12	13	14	15	16
17	18	19	20	21	22	23
24	25	26	27	28	29	30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	1 유두절 / 6.15	2	3	4	5
6	7	8 입추	9	10 말복	11	12
13	14	15 광복절	16 7.1	17	18	19
20	21	22 칠석	23 처서	24	25	26
27	28	29	30 7.15	31		



### 그 외 임신 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

태아검진시간 사용 \_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사용 가능

난임치료휴가(남/녀 가능) \_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(연간 3일, 최초 1일 유급, 2일 무급) 사용 가능

\* 관련 내용을 작성한 문서와 (사업주 요구 시) 난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

☎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

# 성희롱 없는 건강한 일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요

## 평상시에는...

- ◆ 지위를 이용해 사적 만남, 사적 업무 등을 지시하거나 강요 ✕
- ◆ 음담패설 하기, 음란물 보기 등의 행동 ✕
- ◆ 타인의 신체, 외모,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간섭 ✕

## 성희롱이 발생하면...

- ◆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보이면 즉각 멈추고, 그 감정을 존중하며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 사과
- ◆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을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



# 9

September / 2023

# 8

S	M	T	W	T	F	S
		1	2	3	4	5
6	7	8	9	10	11	12
13	14	15	16	17	18	19
20	21	22	23	24	25	26
27	28	29	30	31		

# 10

S	M	T	W	T	F	S
1	2	3	4	5	6	7
8	9	10	11	12	13	14
15	16	17	18	19	20	21
22	23	24	25	26	27	28
29	30	31				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				1	2
3	4	5	6	7	8 백로	9
10	11	12	13	14	15 8.1	16
17	18	19	20	21	22	23 추분
24	25	26	27	28	29 추석 / 8.15	30



##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제도

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유급휴가 1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 
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, 1회 분할사용 가능)

\*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분 휴가급여 지원(상한액 매년 고시)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

☎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

# 마스크를 대충 쓰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, 예방교육도 대충하면 효과가 없습니다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

상시근로자

100인 미만 횟수 제한없이 지원

100인 이상 ~ 300인 미만 연 1회 초과 교육부터 지원

◆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

▶ '자주찾는 자료실'에서 '무료강사 지원안내'로 검색해보세요

\*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청 시 지원 가능(연락처는 맨 뒷장 참조)

# 10

October / 2023

## 9

S	M	T	W	T	F	S
					1	2
3	4	5	6	7	8	9
10	11	12	13	14	15	16
17	18	19	20	21	22	23
24	25	26	27	28	29	30

## 11

S	M	T	W	T	F	S
			1	2	3	4
5	6	7	8	9	10	11
12	13	14	15	16	17	18
19	20	21	22	23	24	25
26	27	28	29	30		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1 국군의 날	2	3 개천절	4	5	6	7
8 한로	9 한글날	10	11	12	13	14
15 <sup>9.1</sup>	16	17	18	19	20	21
22	23	24 상강	25	26	27	28
29 <sup>9.15</sup>	30	31				



###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제도

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(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~35시간)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고용보험에서는 단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.

**단축기간** 1년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할 경우 최대 2년) \* 단축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 급여 지급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

**☎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**

#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

##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자료

- ◆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el.go.kr>)에서 리플릿, 포스터, 매뉴얼, 교육동영상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해보세요
- \* '자주찾는 자료실'에서 검색

## 자가진단 앱

- ◆ 자가진단 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
- Play 스토어(일반 스마트폰), App 스토어(아이폰)에서 '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' 검색

# 11

November / 2023

# 10

S	M	T	W	T	F	S
1	2	3	4	5	6	7
8	9	10	11	12	13	14
15	16	17	18	19	20	21
22	23	24	25	26	27	28
29	30	31				

# 12

S	M	T	W	T	F	S
					1	2
3	4	5	6	7	8	9
10	11	12	13	14	15	16
17	18	19	20	21	22	23
24	25	26	27	28	29	30
31						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		1	2	3	4
5	6	7	8 <small>입동</small>	9	10	11
12	13 <small>10.1</small>	14	15	16	17	18
19	20	21	22 <small>소설</small>	23	24	25
26	27 <small>10.15</small>	28	29	30		



###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(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)

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해당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.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

**☎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**

# 직장 내 성희롱, 고용상 성차별 피해 익명신고센터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

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, 고용상 성차별 피해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 
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

## 신고내용

### ◆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

사업주 및 상급자·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, 고객에 의한 성희롱

### ◆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

모집채용, 임금, 임금 외 금품, 교육배치 및 승진,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

## 신고방법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 ▶ 민원 ▶ 신고센터

▶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또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



# 12

December / 2023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				1	2
3	4	5	6	7 <small>대설</small>	8	9
10	11	12	13 <small>11.1</small>	14	15	16
17	18	19	20	21	22 <small>동지</small>	23
24 / 31	25 <small>성탄절</small>	26	27 <small>11.15</small>	28	29	30

# 11

S	M	T	W	T	F	S
			1	2	3	4
5	6	7	8	9	10	11
12	13	14	15	16	17	18
19	20	21	22	23	24	25
26	27	28	29	30		

# 1

S	M	T	W	T	F	S
	1	2	3	4	5	6
7	8	9	10	11	12	13
14	15	16	17	18	19	20
21	22	23	24	25	26	27
28	29	30	31			



### 대체인력지원금(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)

근로자에게 출산(유산·사산)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후 출산(유산·사산)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.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

☎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

# 성희롱·성차별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!

## 고용평등상담실이 함께 합니다

### 고용평등상담실은?

- ◆ 직장 내 성희롱, 고용상 성차별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통해 법적 권리와 해결방법을 안내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민간단체입니다.

(전국 20곳에서 운영)

### 상담내용

-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항
- 모집·채용·임금·교육·승진·퇴직·정년 등 고용상 성차별
- 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임신부 보호 등 모성권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



# 1

January / 2024

## 12 2023

S	M	T	W	T	F	S
					1	2
3	4	5	6	7	8	9
10	11	12	13	14	15	16
17	18	19	20	21	22	23
24	25	26	27	28	29	30
31						

## 2 2024

S	M	T	W	T	F	S
				1	2	3
4	5	6	7	8	9	10
11	12	13	14	15	16	17
18	19	20	21	22	23	24
25	26	27	28	29		

SUN	MON	TUE	WED	THU	FRI	SAT
	1 <small>신정</small>	2	3	4	5	6 <small>소한</small>
7	8	9	10	11 <small>12.1</small>	12	13
14	15	16	17	18	19	20 <small>대한</small>
21	22	23	24	25 <small>12.15</small>	26	27
28	29	30	31			



### 가족돌봄휴직

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(무급)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.

\*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\* 연간 최장 90일, 분할사용 가능
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



### 가족돌봄휴가

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양육의 사유로 가족을 긴급히 돌보기 위해 (무급)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.

\*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\* 연간 10일, 1일 단위로 사용 가능

☎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

#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**참지 말고 상담하세요**

##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연락처



### 서울권역

- (사)서울여성노동자회  
02-3141-9090 / 서울 마포구
- (사)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
0505-515-5050 / 서울 영등포구
- (사)노동희망  
02-302-0801 / 서울 서대문구
- 한국여성민우회  
02-706-5050 / 서울 마포구



### 대전권역

-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 
043-273-7801 / 충북 청주시
- (사)대전여민회  
042-226-9790 / 대전 중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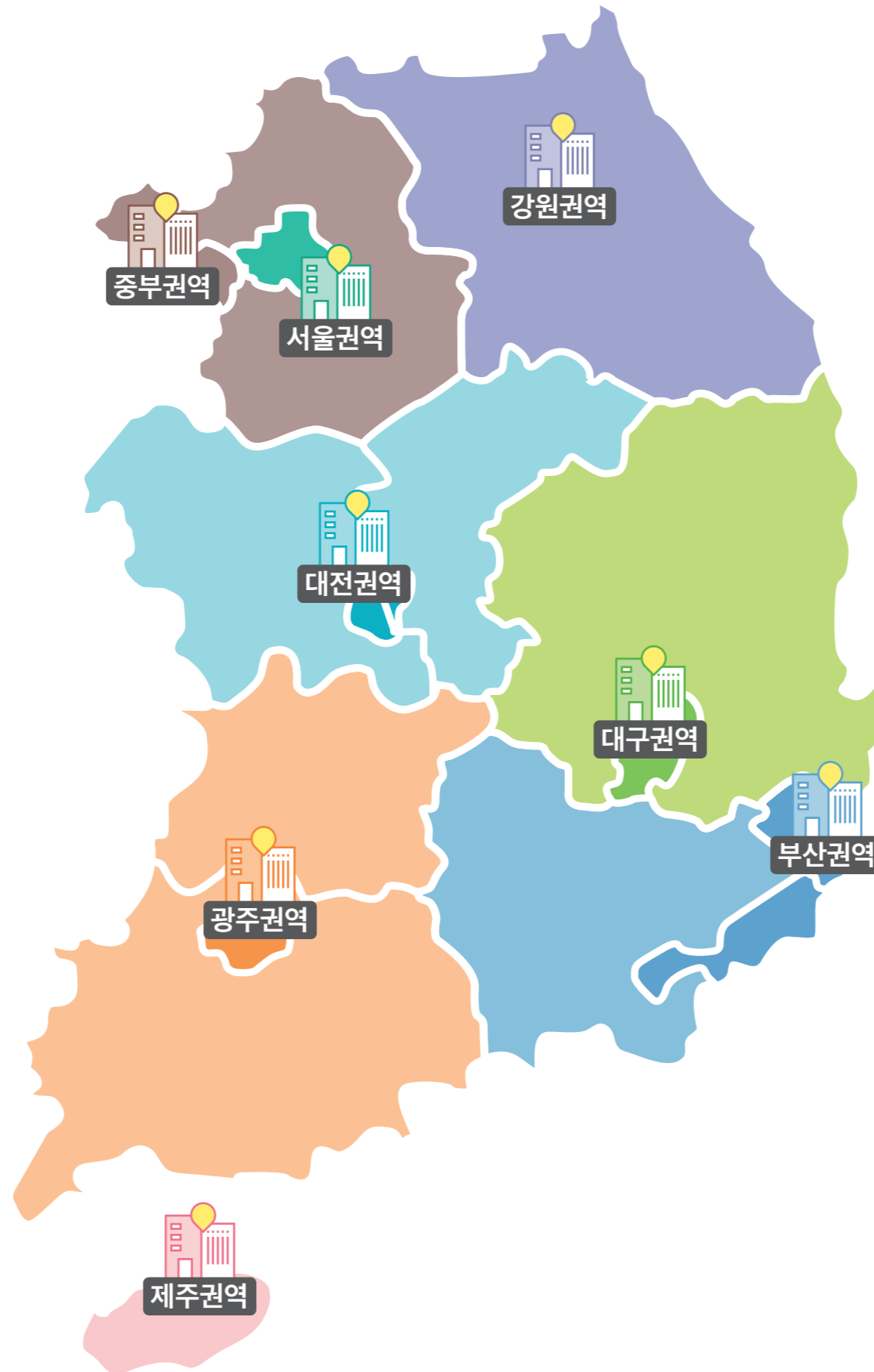
### 광주권역

- (사)광주여성노동자회  
062-361-3028 / 광주 서구
- (사)전북여성노동자회  
063-286-1633 / 전북 전주시
-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 
061-792-0360 / 전남 광양시



### 제주권역

- (사)제주여민회  
064-756-7261 / 제주 제주시



### 중부권역

- (사)인천여성노동자회  
032-524-8831 / 인천 부평구
- (사)부천여성노동자회  
032-324-5815 / 경기 부천시
- (사)수원여성노동자회  
031-246-2080 / 경기 수원시
- (사)안산여성노동자회  
031-494-4362 / 경기 안산시



### 강원권역

- 한국노총 춘천영서지부  
033-243-7576 / 강원 춘천시



### 대구권역

- (사)대구여성회  
053-427-4595 / 대구 중구
- (사)대구여성노동자회  
053-428-6340 / 대구 서구
- (사)경주여성노동자회  
054-744-9071 / 경북 경주시



### 부산권역

- (사)부산여성회  
051-506-2590 / 부산 동래구
- (사)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
055-264-5049 / 경남 창원시

※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, 고용상 성차별 등으로 피해받은 근로자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민간단체입니다

##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

지방고용노동관서	관할지역	연락처
서울지방고용노동청	중구, 종로구, 서초구, 동대문구	02-2250-5877
서울강남지청	강남구	02-3465-8464
서울동부지청	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	02-2142-8834
서울서부지청	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	02-2077-6115
서울남부지청	영등포구, 강서구, 양천구	02-2639-2144
서울북부지청	성북구, 도봉구, 강북구, 중랑구, 노원구	02-950-9830
서울관악지청	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	02-3282-9014
중부지방고용노동청	인천, 중구, 동구, 남구, 연수구, 남동구, 옹진군	032-460-4650
인천북부지청	부평구, 계양구, 서구, 강화군	032-540-7936
부천지청	부천시, 김포시	032-714-8756
의정부지청	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, 철원군	031-850-7628
고양지청	고양시, 파주시	031-931-2839
경기지청	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	031-259-0320
성남지청	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	031-788-1536
안양지청	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광명시	031-463-7365
안산지청	안산시, 시흥시	031-412-1959
평택지청	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	031-646-1147
강원지청	춘천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, 가평군	033-269-3575
강릉지청	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양양군, 고성군	033-650-2516
원주지청	원주시, 횡성군	033-769-0816
태백지청	태백시, 삼척시	033-550-8623
영월출장소	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	033-371-6221
부산지방고용노동청	부산, 중구, 동구, 서구, 사하구, 영도구, 남구, 부산진구, 연제구	051-850-6425
부산동부지청	동래구, 해운대구, 금정구, 수영구, 기장군	051-559-6622
부산북부지청	북부, 사상구, 강서구	051-309-1562
창원지청	창원시, 창원군, 함안군, 의령군	055-239-6519
울산지청	울산시	052-228-3856

지방고용노동관서	관할지역	연락처
양산지청	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	055-330-6484
진주지청	진주시, 사천시, 합천군, 거창군, 산청군, 하동군, 함양군, 남해군	055-760-6503
통영지청	통영시, 거제시, 고성군	055-650-1915
대구지방고용노동청	대구 중구, 동구, 수성구, 북구, 경북 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, 군위군	053-667-6223
대구서부지청	대구 서구, 달서구, 남구, 달성군, 경북 칠곡군, 고령군, 성주군	053-605-9114
포항지청	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	054-271-6815
구미지청	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	054-450-3513
영주지청	영주시, 상주시, 문경시, 봉화군	054-639-1161
안동지청	안동시, 예천군, 의성군, 영양군, 청송군	054-851-8035
광주청	광주시, 화순군, 곡성군, 구례군, 담양군, 장성군, 영광군, 함평군, 나주시	062-975-6417
전주지청	전주시, 남원시, 정읍시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, 완주군, 진안군, 무주군	063-240-3444
익산지청	익산시, 김제시	063-839-0027
군산지청	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	063-450-0522
목포지청	목포시, 무안군, 영암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장흥군, 진도군, 신안군	061-280-0130
여수지청	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	061-650-0198
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	제주시, 서귀포시	064-728-7118
대전지방고용노동청	대전시, 세종시, 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금산군	042-480-6245
청주지청	청주시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, 증평군	043-299-1143
천안지청	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예산군	041-560-2992
충주지청	충주시, 제천시, 음성군, 단양군	043-840-4056
보령지청	보령시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부여군	041-930-6123
서산출장소	서산시, 태안군	041-661-5630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'제대로' 하는 것이  
성희롱을 막는 유일한 백신입니다